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법(법률 제18607호)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

2. 주요내용

가.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(제21조의2)

법제18조의8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중 기준을 충족한 자를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에 따라 수급자, 차상위자, 청년을 포괄하도록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전단 중 “제18조의4”를 “제18조의8”로, “이상”을 “이하”로, 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”을 “자산형성지원 대상자의 가구 여건, 소득·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”를 “선정된 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법 제18조의4제4항”을 “법 제18조의8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전단 중 “법 제18조의2”를 “법 제18조의6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2제1항 중 “법 제18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의7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4제5호 중 “법 제18조의2”를 “법 제18조의6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8 중 “법 제18조의6제5항”을 “법 제18조의10제5항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2항제8호 중 “법 제18조의4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의8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법 제18조의6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의10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	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
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<u>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</u> 선정한다.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① ----- 제18조의8----- ----- ----- --- 이하----- 자산형성지원 대상자의 가구 여건, 소득·재산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<u>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</u> (이하 이 조에서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지원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② ----- ----- 선정된 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보장기관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	⑧ ----- 법 제18조의8제4항-----

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자활복지개발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⑨ (생략)

제26조(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)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.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채용 후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(算定)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

-----.

⑨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) ① 법 제18조의6-----

-----.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법 제18조의7제1항-----

이라 한다)의 적립금액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 ② (생략) 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법 제18조의2</u>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. ~ 10. (생략) 제26조의8(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) 보건복지부장관은 <u>법 제18조의6제5항</u>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. 제4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생략)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	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법 제18조의6</u>----- ----- ----- 6. ~ 10. (현행과 같음) 제26조의8(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) ----- ----- <u>법 제18조의10제5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제4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-

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7. (생략) 8. <u>법 제18조의4제1항</u>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사무 9. <u>법 제18조의6제1항</u>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	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법 제18조의8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9. <u>법 제18조의10제1항</u>----- ----- -----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072